서울특별시 강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10. 16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)

□ 제안이유

지방중소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이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하여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이관·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43조
 - →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17
- 나.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신설 (안 제6조제6항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(안 제3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43조
- 2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17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7. 8. 11. ~ 2017. 8. 31.) 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규제 심사대상 미해당
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-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
 -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

○ 검토 결과

지방중소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 개정되어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※ 붙임 관계법령 1부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43조(육성계획의 추진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 의 활용
- 2.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(약칭: 중소기업진흥법)

[시행 2017.9.22.] [법률 제14685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7.>

- 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- 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- 3. 「지방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
- ② 정부는 시·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을 할 수 있으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.>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 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.>

[본조신설 2016.3.29.]